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8월 31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8. 9.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정국장 진정래)

가. 제안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4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
-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을 규정함 (안 제17조~제20조)

-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21조~제23조)
-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의 개정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 범위,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절차, 처리기 간,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에서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 호
----------	-------

제출연월일 : 2018.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

(안 제2조~제5조)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4조)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

라.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을 규정함 (안 제17조~제20조)

마.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3조)

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7.19. ~ 8.8. /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다음 각 목의 안건 심의를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안건
 - 나.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5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조(불이익변경금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구청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 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6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8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

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9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및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